

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																
<p>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>(기재생략)</p> <p>제 1 조 (목적) (기재생략)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 1.~9.(기재생략) 10. "기업인터넷뱅킹"이라 함은 HanaCBS Light, Hana CBS, BiCNET 등을 말합니다. 11.(기재생략)</p> <p>제 3 조(발주서에 대한 대금의 지급)</p> <p>① 구매기업은 은행에게 통보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구매기업 명의의 계좌로 채권확정된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(하나은행에 개설한 구매기업 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)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예금주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예금주 사업자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계좌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	비고				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	<p>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)</p> <p>(삭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 조 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 1.~9. (현행과 같음) 10. "기업인터넷뱅킹"이라 함은 기업뱅킹, CMS 등을 말합니다. 11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3 조(발주서에 대한 대금의 지급)</p> <p>①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,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, 그 명세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채권확정된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[※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예금주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계좌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비고				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	<p>용어 수정</p> <p>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</p>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	비고															
			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															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비고															
			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															

<p>②~⑤ (기재생략)</p> <p>제 4 조(대상거래처의 선정) 이 협약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전송하는 대상은 구매기업이 추천하거나,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 중에서 은행과 미래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, 상생 e-안심팩토링대출, 상생일반구매론 등 확정채권과 관련한 별도 약정을 체결한 협력기업으로 합니다.</p> <p>제 5 조(신용공여기간)~제 6 조(대금지급확약비율) (기재생략)</p> <p>제 7 조(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의 총 한도 및 변제 의무) ① (기재생략)</p>	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4 조(대상거래처의 선정) 이 협약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전송하는 대상은 구매기업이 추천하거나,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 중에서 은행과 미래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, 상생일반구매론 등 확정채권과 관련한 별도 약정을 체결한 협력기업으로 합니다.</p> <p>제 5 조(신용공여기간)~제 6 조(대금지급확약비율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7 조(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의 총 한도 및 변제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일부 상품 유형 삭제</p>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94 639 282 850">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</td> <td data-bbox="282 639 1003 850">연계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대출의 형태별로 약정된 대출한도 또는 여신(한도)금액 범위 내 1.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. 상생 e-안심팩토링대출 3. 상생일반구매론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4 850 282 935">이자율 등</td> <td data-bbox="282 850 1003 935">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4 935 282 1019">지연배상금률</td> <td data-bbox="282 935 1003 1019">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함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4 1019 282 1147">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</td> <td data-bbox="282 1019 1003 1147">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4 1147 282 1189">변제방법</td> <td data-bbox="282 1147 1003 1189">개별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</td> </tr> </table>	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	연계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대출의 형태별로 약정된 대출한도 또는 여신(한도)금액 범위 내 1.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. 상생 e-안심팩토링대출 3. 상생일반구매론	이자율 등	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	지연배상금률	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함	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변제방법	개별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1034 639 1223 850">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</td> <td data-bbox="1223 639 1930 850">연계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대출의 형태별로 약정된 대출한도 또는 여신(한도)금액 범위 내 1.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. (삭제) 3. 상생일반구매론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34 850 1223 935">이자율 등</td> <td data-bbox="1223 850 1930 935">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34 935 1223 1019">지연배상금률</td> <td data-bbox="1223 935 1930 1019">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함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34 1019 1223 1147">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</td> <td data-bbox="1223 1019 1930 1147">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34 1147 1223 1189">변제방법</td> <td data-bbox="1223 1147 1930 1189">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</td> </tr> </table>	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	연계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대출의 형태별로 약정된 대출한도 또는 여신(한도)금액 범위 내 1.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. (삭제) 3. 상생일반구매론	이자율 등	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	지연배상금률	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함	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변제방법	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<p>상품 유형 삭제 조 제상</p> <p>용어 수정</p>
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	연계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대출의 형태별로 약정된 대출한도 또는 여신(한도)금액 범위 내 1.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. 상생 e-안심팩토링대출 3. 상생일반구매론																					
이자율 등	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																					
지연배상금률	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함																					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
변제방법	개별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
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	연계하여 취급하는 다음 각 대출의 형태별로 약정된 대출한도 또는 여신(한도)금액 범위 내 1.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. (삭제) 3. 상생일반구매론																					
이자율 등	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																					
지연배상금률	위에서 나열된 각 연계 대출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함																					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
변제방법	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
<p>② (기재생략)</p> <p>③ 협력기업에게 취급하는 대출금액의 총 잔액은 제 1 항에서 정한 “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”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④~⑤ (기재생략)</p> <p>제 8 조(매출채권의 양도) ①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협력기업에게 취급하는 대출금액의 총 잔액은 제 1 항에서 정한 “협력기업에 대한 총 한도”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8 조(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) ①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</p>	<p>용어 수정</p> <p>조 제목 수정</p>																				

<p>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	<p>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	
<p>(신설)</p>	<p>②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	<p>양도담보 제한 계약에 대한 양도승낙 조건 추가 기재</p>
<p>② (기재생략) 제 9 조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 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협력기업의 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 제 9 조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 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협력기업의 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매출채권을 (가)압류하였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	<p>체하</p> <p>용어 수정</p>
<p>제 10 조(발주서의 전송, 취소 및 변경) 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,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그러나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발주서의 취소나 변경이 제한됩니다.</p>	<p>제 10 조(발주서의 전송, 취소 및 변경) 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,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발주서의 취소나 변경이 제한됩니다.</p>	<p>용어 수정</p>
<p>②~③ (기재생략)</p> <p>제 11 조(채권확정) ①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납품 완료 즉시 매출채권을 확정하여 발주서의 납품기한일까지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(기재생략)</p> <p>③ 협력기업의 미래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, 협력기업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</p>	<p>②~③ (기재생략)</p> <p>제 11 조(채권확정) ①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납품 완료 즉시 매출채권을 확정하여 발주서의 납품기한까지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협력기업의 미래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, 협력기업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</p>	<p>용어 수정</p> <p>용어 삭제</p>

--	--	--

2. 개정 시행일 : 2019년 5월 30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